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7. 6. 23 규칙 제 691호
  개정 1998. 9.23
               규칙 제 722호(직제규칙)
      2003. 11. 18
               규칙 제 824호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5. 11. 22
               규칙 제 865호
      2008. 2. 1
               규칙 제 932호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08. 6. 16
               규칙 제 983호
      2010. 2. 24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11
               규칙 제1078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4. 8.14
               규칙 제108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9. 8
               규칙 제1134호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1180호
일부개정 2018. 7.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9. 4
일부개정 2023. 9.18 규칙 제128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2〉
-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문화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9. 23, 2003. 12. 23, 2008. 2. 1,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 ② 교향악단의 지휘자,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농악단의 감독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2. 24〉
- 제3조(공연) 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
 -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정원)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정액급식비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22. 2018. 4. 4〉

-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월액은 「별표 2〕와 같다.
- 2.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 액으로 [별표 3] 과 같다.
-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에 두는 상임 간부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 와 같다.
- 4. "조정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예술적인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 와 같다.
- 5. "장기근속수당"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 6. "정액급식비"는 단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11] 과 같이 한다.
- 제6조(기말장려수당) 상임단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에 대한 연 600 퍼센트를 3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에 지급한다. 〈개정 2008. 2. 1, 2018. 7. 31〉

[제목개정 2008. 2. 1]

- 제7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 월과 7월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7. 31〉
-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2. 1〉
 - 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광명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 ③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 제9조(여비등 실비보상) ① 각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료

및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10만원, 전형위원에게는 전형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3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공무원 및 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1. 18, 개정 2018. 4. 4〉

「제목개정 2003. 11. 18〕

- 제10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에 대한 연 100 퍼센트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정 2018. 7. 31〉
-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적용)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 ② 각 예술단별 간부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7]과 [별표 8]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 ③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1. 22〉
 - ④ 각 예술단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별표 9]와 같다.
 - ⑤ 호봉조정은 연2회로 하며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 제12조(단원 정기 실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 ② 실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 중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휘자와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의 향상 여하에 따라서 호봉과 수당을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상·하 반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
 - ②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로 한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퇴직금) 광명시립예술단체 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1, 2016. 9. 8〉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3.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1. 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4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4. 7. 11 규칙 제1078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 ⑧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시민행복국장"으로 한다.
- ⑨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2016. 9. 8 규칙 제11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전의 공무원 연금법 준용 대상자는 개정전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18. 4. 4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 ⑥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9. 8〉

단원의 구성 및 정원

(단위 : 명)

단 체 별	직		책	정 원	비고
		계		114	
	지	휘	자	1	
	부	지 휘	자	1	
	악		장	1	
	단	무	장	1	
교 향 악 단		수 석 연 주	자	15	
JE 8 7 U		차 석 연 주	자	15	
	OJ PJ	단	원	59	
	일반 단원	연 구 단	원	18	
		악 보 담	당	1	
		악 기 담	당	1	
		사 무 단	원	1	
		계		33	
	지	휘	자	1	
	악		장	1	
	단	무	장	1	
국악관현악단		수 석 단	원	2	
	الدام	차 석 단	원	2	
	일반 단원	총	무	1	
		사무및악보딤	당	1	
		단	원	24	

(단위 : 명)

단	 체	별	직				책	정	<u></u> 원	刊	고			
-	~1				1)		~	7		-1		_		
)				1					_		
			지	후 			자		1			_		
			단	무			장		1					
			반	주 			자		1					
성	인 합 청	난 단		-	반	주	자		1					
	일반	트	레	०]	너		1							
		달만 단원	단	운	<u> </u>	장		1						
	나 긴	파	Ē	Ē.	장		4							
				단			원	6	3					
				겨				5	3					
					안	무	1_		자		1			
, ,		۱	훈	런	1		장		1					
무	8	단	단	무	1_		장		1					
			일반	수 ^	석	단	원		4					
			단원	단			원	4	6					
				겨				12	3					
			지	₹	1		자		1					
수년	년소녀합·	창다	단	무	1_		장		1					
		0 L	반	주	<u> </u>		자		1					
			일반 단원	학	생	단	원	12	0	무	급			
				겨				30)					
			감				독		1					
ا ا	1	단	무	1_		장		1						
농	악	단		수석	및	단육	원장		1					
			일반	안	두	1	자		1					
			단원	단			원	26	5					

[별표 2] 〈개정 2008. 2. 1〉

급 여 월 액

(단위:원)

호 봉	급 여	刊 고
정	1,434,000	
22	1,170,000	
21	1,140,000	
20	1,110,000	
19	1,070,000	
18	1,040,000	
17	1,010,000	
16	990,000	
15	970,000	
14	950,000	
13	930,000	
12	910,000	
11	890,000	
10	870,000	
9	850,000	
8	830,000	
7	810,000	
6	790,000	
5	770,000	
4	750,000	
3	730,000	
2	710,000	
1	690,000	

[별표 3] 〈개정 2016. 9. 8〉

예 능 연 구 보 조 비

(인 원:명) (월액단위:원)

																			근 1			_
		교 향	악 단								기	타	단	체								
등급		표 상	9 12	월 액	Ę	국악관현악단		샹	d인햩	감창단	-	Ĩ	구 용	· 단	소	년소니	합창	단		농 인	난	
	인원	월 액	직 책	면 택	인원	직 🧦	백	인원	직		책	인원	직	책	인원	직		책	인원	직		책
계	114				33			73				53			3				30			
1	1	500,000	지 휘 자																			
2	1	430,000	부 지 휘 자	450,000				1	지	휘	자											
3	1	410,000	악 장	400,000																		
4	1	370,000	단 무 장	360,000	1	지 휘	자	1	단	무	장	1	안	무 자					1	감		독
5	15	310,000	수석연주자	310,000	1	악	장	1	반	주	자	1	훈	련 장	1	지	휘	자				
6	15	270,000	차 석 연 주 자	290,000	1	단 무	장	1	부	반 주	· 자	1	단	무 장								
7		250,000		250,000	2	수 석 단	원	1	트	레이	너	4	수	석 단 원	2	단무	'장,빈	주자				
8		230,000		210,000	2	차 석 단	원	1	단	원	장											
9	59	210,000	단 원	180,000				4	파	트	장								1	단	무	장
10	18	190,000	연 구 단 원	160,000	1	총	무															
11	1	170,000	악 보 담 당	150,000	24	단	원	63	단		원	46	단	원					1	수		석
12	1	150,000	악 기 담 당	140,000	1	사무및악보다	간원												1	안	무	자
13	1	130,000	사 무 단 원	130,000															26	단		원

[별표 4] 〈개정 2016. 9. 8〉

직 책 수 당 및 조 정 수 당

(단위 : 원)

월직책 수 당	조정 수당	교향악단	국 악 관현악단	무용단	성 인 합창단	소년소녀 합 창 단	농악단	비고
170,000	250,000	지휘자	지휘자	안무자	지휘자	지휘자	감독	
140,000	200,000	부지휘자						
130,000	170,000	악장	악장	훈련장				
110,000	150,000	단무장	단무장	단무장	단무장 반주자	단무장 반주자		
100,000	130,000	수석연주자	수석단원	수석단원	부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안무자	
80,000	120,000	차석연주자 연구및악보담당	차석단원		단원장 파트장		수석 및 단원장	
60,000	100,000	사무및악기담당	시무 및 악보담당	사무단원				

[별표 5]

장 기 근 속 수 당

(단위:원)

구 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당 20년 이상 15년 미만 3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30년 이상		 	 (단川・단/
급 액 50,000 60,000 80,000 100,000	구 분		20년 이상
	급 액		100,000

[별표 6] 〈개정 2016. 9. 8〉

예술단 직책여비 지급 구분표

구 분	직 책	지 급 기 준
교 향 악 단	지 위 자 장 장 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 " 6급 " 7급 " 7급 " 7급 " 8급 " 9급 "
국 악 관 현 악 단	지 위 자 악 장 단 무 장 수 석 단 원 차 석 단 원 총 무 단 원 사무및악보담당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 " 7급 " 7급 " 7급 " 7급 " 7급 "

구 분	직	책	지 급 기 준
무 용 단	훈 련 단 무 수 석 단	자 장 장 원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7급 " 7급 " 8급 "
성 인 합 창 단	단 무 반 주 부 반 주 자 , 트 레 이 단 단 원 파 트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7급 " 7급 " 7급 " 7급 " 8급 "
소년소녀합창단	단 무	자 장 자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7급 "
농 악 단		독 장 원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8급 "

[별표 7] 〈개정 2010. 2. 24〉

간부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단 체 별	지	위	호 봉	비고
교 향 악 단	지 후 부 지 악 단 무	장	19 18 16 16	
국 악 관 현 악 단	악	기 자 장 '- 장	19 16 16	
무 용 단	훈 런	- 자 1 장 - 장	19 16 16	
성 인 합 창 단	-	기 자 ¹ 장 ¹ 자	19 16 16	
소 년 소 녀 합 창 단	단 무	기 자 - 장 - 자	19 16 16	
농 악 단	감 단 무	독 - 장	19 16	

[별표 8] 〈개정 2018. 7. 31〉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기 준	환산율
단원경력	ㅇ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
	ㅇ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 동일 분야에	100%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 별표 6에 준함)	100%
유사경력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	운영위원
	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회에서
	ㅇ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한 경력	사정한
	ㅇ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연수

[별표 9] 〈개정 2005. 11. 22〉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

구 분	승 급 기 간	해 당 호 봉
각 예 술 단 체	재 직 1 년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재 직 2 년	16호봉부터 22호봉까지

[별표 10]

정 근 수 당

근 무 년 수	지 급	ojj	刊	고
1년 미만	월봉급액의	5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6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6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7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7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8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8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9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9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100%		

[별표 11] 〈신설 2018. 4. 4〉

정액급식비

(단위 : 원)

구 분	월 지급액	비고
상임단원	80,000	비상임 단원은 별도지침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9. 18〉

광명시립○○○○합창단응시원서

광명시장귀하

나는 제 회 광명시립〇〇〇〇합창단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 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인. 서명) 주 소 월 년 일 학교 (과 녆)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최종학력 학교 (과 년 월 일 년) 졸업 녆 월 일 부터 경 녆 월 잌 까지 종사 선택곡명 성 (한글) 성 희망부문 사 짓 별 명 (하문) 생년월일 (반명함판) 응시번호 . . (세) ······ 점 ······ 서 ······ 선 ······· 슺 시 丑 선택곡명 사 진 제 회 광명시립〇〇〇〇합창단 시험 희망부문 성 명: 생년월일: . . 일생 (반명함판) 응시번호 년 월 일